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7

발의연월일: 2024. 6. 10.

발 의 자:최민희·윤건영·박은정

한병도 • 김 현 • 정을호

허 영·전현희·김원이

강득구 · 허종식 · 이해민

조인철 · 이학영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정파적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이사회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국민들이 직접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11人"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理事는"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하여야 하고,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시 최 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 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 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 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49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 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에 따라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 중 "추천"을 "임명제청"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第46條(理事會의 設置 및 운영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理事會는 理事長을 포함한	②
이사 <u>11人</u> 으로 구성한다.	<u>15명</u>
③ 理事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③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고려하여 <u>방송통신위원회에서</u>	<u>지역성 및 사회</u>
추천하고 大統領이 任命한다.	<u>다음 각 호에</u>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
	<u>령이 임명한다</u> .
<u> <신 설></u>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
	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
	명. 이 경우 각 교섭단체는
	특정 성(性)을 1명 이상 추천
	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u><신 설></u>	2. 방송통신위원회가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명(지역방송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1명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

<신 설>

<신 설>

<신 설>

- <u>④</u> ~ <u>⑥</u> (생 략)
- ⑦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단서</td>신설>

- (性)이 2명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 3. 공사의 시청자위원회(지역총 국의 시청자위원회도 포함한 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 경우 특정 성(性)이 1명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공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 성을 위임하여 과반 이상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 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 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 체는 이사 추천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며, 공모·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u>⑤</u> ~ <u>⑦</u> (현행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와 같음)
- 8 -----
- -----. <u>다만, 제</u> 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규정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신 설>

<신 설>

(8·9) (생 략)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理事會 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 議決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8. ~ 15. (생략)

한 3인 이하의 복수의 사장후 보자에 대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회 이상 부결되는 경우에는 마지 막 투표시 최고득표자와 차점 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①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사장 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① · ② (현행 제8항 및 제9항 과 같음)

第49條(理事會의 機能) ① -----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50조의2의 사장후보추
천위원회 구성과 운영
8.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신 설>

- ② (현행과 같음)
- 제50조의2(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추천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선정된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와 공사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활동을 지원해야 한 다.
 -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 회가 제2항에 따라 구성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⑤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사장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 의토론 과정을 거쳐 3인 이하 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 천하여야 한다.
 - ⑥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

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추 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 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이사회가 정한다.